



정 관

CJ 제일제당

정 관

2007년 7월 26일 제정
2008년 2월 29일 개정
2009년 2월 27일 개정
2010년 3월 26일 개정
2011년 3월 18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2016년 3월 18일 개정
2017년 3월 24일 개정

CJ 제일제당 주식회사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본 회사의 상호는 “CJ 제일제당”이라 하며, 한글로는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라 하고, 영문으로는 CJ CheilJedang Corporation 이라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설탕 및 기타 감미료 제조, 가공, 소분, 판매업
- 2) 제분업 및 가공, 소분, 판매업
- 3) 구루타민산소다, 핵산 등 조미향신료 및 아미노산의 제조, 가공, 소분, 판매업
- 4) 식용유 및 동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소분, 판매업
- 5) 육류의 가공, 소분, 판매업
- 6) 장류의 제조, 가공, 소분, 판매업
- 7) 사료의 제조, 판매업
- 8) 유기질비료와 배합비료의 제조, 가공판매업
- 9) 발효화학공업
- 10) 유기 및 무기화학 공업제품(염료, 안료, 도료, 농약 및 농약원재, 살충제, 표백제, 경수연화제, 요업재료, 촉매, 섬유가공조제, 각종첨가제, 각종중간제등 포함)의 제조 및 판매업
- 11) 의약품, 동물의약품, 의료용구 및 의료기기의 제조판매업, 도매업 및 수출입업

- 12)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재배, 사육, 양식, 가공판매업
- 13) 주류제조 및 판매업
- 14) 부동산업 및 부동산 임대업
- 15) 수출입업 및 동태행업
- 16) 기타 음식료품의 제조, 가공, 소분, 판매업
- 17) 보관 및 창고업
- 18) 세정제, 계면활성제, 합성세제, 화장비누, 화장품 및 화장품원료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 19) 의약부외품, 치약, 위생용품, 포장용기의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 20) 유통전문판매업
- 21) 음료수 및 다류 제조, 가공, 소분, 판매업
- 22) 음식점업 및 급식업
- 23) 백화점, 슈퍼마켓, 신유통업 등 각종 도·소매업 및 중개업
- 24) 영상물, 음반 등의 제작, 상영 및 판매업
- 25)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업
- 26) TV(CA TV 포함)프로그램 제작 등
- 27) 행사기획, 연출업
- 28) 광고물제작 및 광고업무대행업
- 29) 정기간행물 발행 및 저작권관리업
- 30) 빵, 과자,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의 제조, 가공판매업
- 31) 수상 운수유지 서비스업
- 32) 연예인 대리업
- 33) 영화 제작용품 임대업
- 3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35) 주차장 운영업
- 36) 인터넷사업
- 37)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 38) 교육서비스업
- 39) 국내·외농업개발업
- 40) 신·재생에너지 사업
- 41) 하수, 축산폐기물, 식품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 42) 낙농제품의 제조, 판매업
- 43) 곤충원료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 44) 전 각항의 관련 설비의 제조, 판매, 수출입업과 기술용역서비스의 판매 및 수출입업
- 45) 전 각항의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본 회사의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 4 조(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j.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수권자본)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 천만주로 한다.

제 6 조(주식의 액면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 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③ 본 회사의 주권은 1 주권, 5 주권, 1 십주권, 5 십주권, 1 백주권, 5 백주권, 1 천주권, 1 만주권의 8 종으로 한다.

제 7 조의 2 (제 1 종 우선주식)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제 1 종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1 천만주로 한다.
- ② 제 1 종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 ③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한 종류의 주식을 배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 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본 조의 우선주주는 그 발행되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④ 제 1 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 7 조의 3 (기타 우선주식)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기타 우선주식은 이익배당우선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또는 1 주당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에 대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이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⑥ 본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 ⑦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 9 조의 4 의 규정의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7 조의 4 (의결권배제주식)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의결권배제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③ 이익배당우선주식을 제 1 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동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 7 조의 5 (전환주식)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을 발행

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 ③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④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전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⑤ 본 회사는 전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 ⑥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30 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4. 전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 가.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 ⑦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 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 9 조의 4 의 규정 준용 여부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7 조의 6 (상환주식)

-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 분의 1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상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③ 상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 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본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 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본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 8 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9 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 본 회사가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5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 1 항 제 3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 1 항 제 2 호, 제 3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본 회사는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⑦ 본 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

제 9 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 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상법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의 범위에서 상법 시행령 제 30 조 제 4 항에서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본 회사의 임·직원 또는 관계회사의 임·직원(본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또는 상법 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제 7 조의 2 내지 6 의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제 1 항에 의한 결의일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 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⑥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9 조의 4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의 4(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 등록된 질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 8 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전항의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 3 항의 신고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11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15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 ② 본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2 주간전에 공고한 후 3 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사 채

제 12 조(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3 조(전환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2 천 5 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보통주식 1 천 2 백 5 십억원, 제 7 조의 2 내지 6 의 종류주식 1 천 2 백 5 십억원 이내로 하고 전환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의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제 13 조의 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2 천 5 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1 천 2 백 5 십억원, 제 7 조의 2 내지 6 의 종류주식 1 천 2 백 5 십억원 이내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한다.

제 13 조의 3(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8 조, 제 10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4 조(소집 및 통지)

- ① 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후 3 개월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 ②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③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중앙일보 외 1 개 일간신문에서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④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 15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서울특별시내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타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16 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제 16 조의 2(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언행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7 조(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18 조(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19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상황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제 21 조(이사의 선임)

- ① 본 회사는 이사 3 인 이상 9 인 이내를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② 본 회사는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상법 제 382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의 2(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 ②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 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22 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 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 23 조(이사의 결손의 보선)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21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관업무를 담당수행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4 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의 3(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면)

-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가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를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 조(경업금지),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하며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본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 26 조(이사회회의 의장) 이사회회의 의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의장의 임기는 당해 이사의 임기와 같이한다. 의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정한 순위에 따른다.

제 27 조(이사회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일의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에도 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8 조(이사회회의 결의)

- ①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또는 동시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28 조의 2(위원회)

- ① 본 회사는 상법 제 393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하여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27 조 및 제 2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9 조(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본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경업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28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 30 조의 2(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총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제 4 항 내지 제 6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31 조(임원의 보수)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제 31 조의 2(임원의 퇴직금) 이사의 퇴직금 지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계 산

제 32 조(사업연도 및 결산)

- ①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하며 결산은 매년 12월 말일의 1회로 한다.
- ②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③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 2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 2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이익금 처분) 본 회사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금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① 이익준비금
- ② 기타의 법정적립금
- ③ 배당금
- ④ 임의적립금
- ⑤ 임직원에 대한 성과배분 상여금
- ⑥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33 조의 2(주식의 소각)

- ① 본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②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및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등 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34 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 34 조의 2(분기배당)

- ① 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 월, 6 월 및 9 월 말일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 ②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의 발행을 포함한다) 신주에 대한 분기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③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 35 조(배당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6 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 단, 본 정관에서 인용하는 법령이 변경 또는 폐지되고 관계법령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법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 37 조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내규를 결정할 수 있다.

제 38 조 본 회사는 적당한 시기에 문화사업 및 육영사업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가 분할전 회사 씨제이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회사 설립의 방법) 회사는 분할전 회사 씨제이 주식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며, 이 분할로 인하여 회사에 이전되는 재산 및 그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2007년 7월 26일 분할전 회사 씨제이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제 3 조(사업연도에 대한 특례) 제 32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 조(이사의 보수에 대한 특례) 제 32 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2007년 7월 26일 분할전 회사 씨제이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제 6 조(이사의 임기에 대한 특례) 설립 시 최초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제 3차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에 만료된다.

제 7 조(분할전 회사의 명칭과 주소)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분할전 회사 씨제이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부 칙 <2008.2.29>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2.27>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3.26>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3.18>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3.30>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3.18>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3.24>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발행된 우선주식에 관하여는 이 정관 제 7 조의 2 를 적용한다.

제3조(신주의 발행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신주는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 신주의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각 신주의 발행한도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하는 신주부터 새로이 기산한다.